#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571

제출연월일 : 2017. 04.

제 출 자:하남시장

### 1. 제안이유

○ 기존 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와 별도로 「하남시 성별영향분 석평가 조례」가 제정됨으로서 중복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 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양성평등 조례 정의 용어 관련 사항 일부 삭제(안 제2조제2호)
- 나.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(안 제8조제3호)
- 다. 성평등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일부 개정(안 제9조제3항제2호)
- 라.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 일부 삭제(안 제10조)
- 마. 시정참여 확대 조항 관련 사항 일부 개정(안 제17조제1항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 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7. 입법예고 결과
  - 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7년 3월 3일 ~ 3월 17일(15일간)
  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# 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- 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- 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-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#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3호 중 "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"를 "성인지"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"하남시의회 의장이"를 "하남시의회가"로 한다.

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어느 한"을 "특정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	사회복지과장
	직위·성명	최 정 호
	팀장	여성가족팀장
	직위·성명	진 일 순
	담당자	김 노 연
	성명·전화번호	(790-5637)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1. ·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"성별영향분석평가"란 「성별영</u>	<u>〈삭 제〉</u>
향분석평가법」제2조제1호에 따라	
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	
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	
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	
영향을 분석 ·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	
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	
<u>는 것을 말한다.</u>	0 (회레기 기이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	제8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 기 위하여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(이	
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1. · 2. (생략)	·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b>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</b> 예산	3. 성인지
에 관한 사항	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구성) ① · ② (생략)	제9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경제·복지	③
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	
무원 3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	,
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b>하남시의회 의장이</b> 추천한 의원 1명	2. <u>하남시의회가</u>

현 행	개 정 안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궐위원의 임</u> <u>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u>〈단서 삭제〉</u>
제17조(시정참여 확대) ① 시장은 정책결	제17조(시정참여 확대) ①
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·	
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	
중 <u>어느 한</u>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	- <u>특정</u>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② · 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 【관계법령 발췌서】

####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